

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박성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0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  
발 의 자: 박성연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곽향기, 구미경, 김영옥,  
김춘곤, 윤영희, 이새날,  
이성배, 이은림, 이종배,  
채수지, 최진혁 의원(11  
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제6항 신설).
- 나.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제3항 신설).
- 다. 법제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21조제3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#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”을 “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제1항 중 “법 제7조”를 “「청년기본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청년의 고용확대 등) ① ~ ⑤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2조(청년의 고용확대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 <u>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 ①·②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21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생략)           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<u>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u>            ④ (생략)</p>	<p>제21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<u>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1항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
<p>제22조의2(청년의 날) 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</p>	<p>제22조의2(청년의 날) ① -----            -----</p>

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 
----- 「청년기본법」 제7조

-----  
-----.  
② (현행과 같음)

문서번호

2023101000000020

## 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박성연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0.

회신일 : 2023.10.11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##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#### 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(청년의 고용 확대 등) 제6항 및 제14조(청년의 금융 생활 지원 등) 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[참고] 2023년도 청년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12조	미래 청년 일자리	9,050,000
제14조	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	2,037,000
	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(영테크)	3,149,378

자료: 2023 서울시 예산서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 재정분석담당관  
담    당    관    오희선  
추계세제팀장    이정수  
주    무    관    김지혜  
☎ 02-2180-7953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**

[붙임1] 2023년 청년지원 관련 사업설명서

① 미래 청년 일자리

□ 사업내용

- 사업 기간 : 2023.1.~2023.12.
- 수행 주체 : 서울시 직접추진
- 지원대상 : 만19~39세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
  - 취업 취약계층 청년, 청년부상 제대군인 등 가점 부여
- 지원내용 : 3개 분야 180여 개 기업에 청년 500명 매칭, 청년 일 경험과 역량 강화 직무교육 동시 병행, 최대 6개월 일자리 제공
- 사업 분야 : 온라인콘텐츠, 제로웨이스트, 소셜벤처 3개 분야
  - [온라인콘텐츠] 온라인 콘텐츠 기획·제작 분야  
(기업 유형) IT·소프트웨어, 웹툰·애니·게임, AI·빅데이터 등  
(직무 유형) 콘텐츠 기획, 영상·디자인, 홍보 매체 운영, IT개발 등
  - [제로웨이스트] 기후환경 관련 그린테일, 업사이클, 리사이클 사업 분야  
(기업 유형) 기후대기, 생태, 자원순환, 환경교육, 환경평가  
(직무 유형) 환경교육, 스토어 매니저, 캠페인 운영, 경영지원 등
  - [소셜벤처]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소셜벤처 분야  
(기업 유형) 교육 서비스, 문화예술기획, 경영 자문 등  
(직무 유형) 마케팅·MD, 디자인, 연구개발, 생산-품질관리 등
- 근로조건 : 주5일 8시간 근무, 월 최대 230만 원 내외
  - \*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

②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

□ 사업내용

- 사업 기간 : 2023.1.1 ~ 2023.12.31
- 지원대상 :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로서 대학(원) 재학(휴학 포함) 중 또는 졸업한 지 5년 이내의 서울시

거주자/서울시 거주 만19~39세 이하, 학자금 대출로 인한  
신용유이자/ 서울시 거주 중인 만19~39세 미만인  
신용회복지원자

- 수행 주체 : 서울특별시, 한국장학재단, 신용회복위원회
- 사업목적 :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 지원

③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(영테크)

□ 사업내용

- 사업 기간 : 2023.1. ~ 2023.12.
- 지원대상 : 만19세 ~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
- 사업내용 : 무료 재무 상담 및 금융교육